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규조문대비표(2018.10.08 개정)

현 행	개 정(안)	비고
〈별첨〉 2.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여 반대매매수량 산정(A,B,C군 15%, D,E,F군 20% 하락 기준) 3.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매수대금 결제불이행 시 가. 결제순서에 따른 미수금 발생 당해 종목(가결제 유가증권이 최우선) 나. 미수발생 당해종목이 부족할 경우에는 최근일자 매수 종목(유가증권종목과 코스닥종목의 구분은 없음) 다. 최근일자 매수 종목이 복수인 경우 종목번호 낮은 순서(유가증권종목과 코스닥종목의 구분은 없음) 라. 신용공여종목 (전일종가 기준으로 상환차손이 예상되는 종목은 반대매매대상에서 제외) ▶ 매도증권 결제불이행 시 미수유가증권 발생 당해 종목	〈별첨〉 2. 제10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여 반대매매수량 산정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군별 A/B/C 군은 전일종가의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일본/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기타국가 주식은 전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 3. 제 10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결제불이행 시 임의처분 순서는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트레이딩가이드 > 주식 시세&주문 > 매매주문에 게시	해외주식 반대매매 산정기준 추가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